

성남 북정1지구 B3블록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 민영 |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4.05.이전부터 계속 거주) | 성남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비투기과열지구 / 비청약과열지역 / 비규제지역 |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지구특성 | |
| 10년 | 3년 | 3년 | 적용 | 공공택지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4.04.05(금) | 24.04.15.(월) | 24.04.16.(화) | 24.04.17.(수) | 24.04.24.(수) | 24.04.26.(금)~ 24.05.03.(금) | 24.05.07.(화)~ 24.05.10.(금)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에 대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민간 사전청약 방식으로 2022.11.18. 사전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선정한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이며, 본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05.입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었던 건설호수, 주택공급가격, 건축규모, 세대평면, 입주예정일 등은 현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성남시)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05.)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자격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됩니다.
- 사전청약 모집공고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수정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18.)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성남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금번 본청약 공고에 별도 청약신청은 불필요하며,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동·호수 배정 후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 동·호 배정 결과의 확인방법 : 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조회- 동·호수 결정 이후 자격검증(주택소유, 전입 제한기간 충족 등) 절차를 거쳐 공급계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11.18.)부터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05.)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자 자격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됩니다.(다만, 상속을 받아 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발표일(2024.04.24.)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정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청약신청 제한 등 당첨유형에 따라 본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금회 공급세대는 지난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계약, 사전당첨 지위 포기 및 부적격 사전당첨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사전 방문예약제 운영 안내

-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당첨자 서류검수, 공급계약체결 등은 사전방문예약제로 진행예정이며, 예약방법 등은 홈페이지(<http://엘리프남위례역.com>)를 통해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홈페이지(<http://엘리프남위례역.com>)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분양사무실의 내부여건, 방문현황, 운영여건에 따라 분양사무실 방문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예정입니다
-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분양 상담 전화(1566-8170)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클러스터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05.(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성남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해당합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천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공급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 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 10년간 |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05.)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3.04.05.이전부터 계속 거주자)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성남시 북정1공공주택지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6천만원(비수도권은 1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단,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예치금 이상인자 |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예치금 이상인자 | 필요 (1순위,12개월이상,예치금) ※지역별/면적별예치금 이상인자 |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3.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O | O | O | O | O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O | O | X | X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성남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분양사무실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실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분양사무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점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및 **1호 또는 1세대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엘리트.남위례역.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대상지역 성남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 |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4.04.24.)** 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유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하여 분양가격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유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유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3년의 거주유무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봄)**

※ **실거주의유무기간의 경우 준공시점 법령 개정상황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차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균등하게 분담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수입인지를 선구매 후 계약서 발행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 50%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 (☎ 044-204-3372~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예비당첨자 일부) | 계약체결 |
|----|--|--|-----------------|--|-------------------------------------|-------------------------------------|
| 일정 | 2024년 4월 15일(월) | 2024년 4월 16일(화) | 2024년 4월 17일(수) | 2024년 4월 24일(수) | 2024년 4월 26일(금) ~ 2024년 5월 3일(금) | 2024년 5월 7일(화) ~ 2024년 5월 10일(금) |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사 분양사무실 방문 (10:00 ~ 16:30) | 당사 분양사무실 방문 (10:00 ~ 16:30)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사무실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Home)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Hom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사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80 케이알산업 1층 ■ 문 의 : ☎ 1566-8170 ※ 자격확인서류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사무실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분양사무실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청 주택과 - 6803호(2024.04.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본 건축물은 성남시 2024-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호(2024.01.19.)를 통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1지구 B3블록
- 공급규모 : 지하 4층~지상29층 아파트 6개동 총 510세대 (사전공급 143세대) 중 금회 공급 367세대(특별공급 224세대, 일반공급 1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24세대 (일반{기관추천} 50세대(이주대책 대상자 15세대 포함), 다자녀가구 35세대, 신혼부부 63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6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7년 06월 예정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공정시기 : 착공 2024.03.29. 및 준공 2027.03.28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분양대금관리자(분양사업자와의 관계 : 시행수탁자)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해당 있음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주택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사전당첨자 배정세대수 | 본청약 배정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배정여부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민영 주택 | 2024000154 | 01 | 084.9200A | 84A | 84.9200 | 27.5117 | 112.4317 | 57.9197 | 170.3514 | 60.0725 | 457 | 124 | 333 | 47 | 32 | 57 | 9 | 60 | 205 | 128 | 21 |
| | | 02 | 084.9700B | 84B | 84.9700 | 28.0639 | 113.0339 | 57.9538 | 170.9877 | 60.1078 | 53 | 19 | 34 | 3 | 3 | 6 | 1 | 6 | 19 | 15 | 4 |
| | 합 계 | | | | | | | | | | | 510 | 143 | 367 | 50 | 35 | 63 | 10 | 66 | 224 | 143 |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각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등의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나 계약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건본주택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되며 홈페이지에 84A타입이 게시되어 있음.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8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 주택 15세대가 기관추천에 포함되어 있음

주택형 표시 안내

| | | |
|-----------------|-----------|-----------|
| 주택형(사전청약/신청기준) | 084.9100A | 084.9300B |
| 주택형(본청약/전용면적기준) | 084.9200A | 084.9700B |
| 약식표기 | 84A | 84B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 | 동구분 (라인별) | 공급 세대 수 | 층구분 | 해당 세대 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20%) | | 중도금(60%) | | | | | | 잔금 (2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10%) | 2차(10%)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
| | | | | | | | | 계약시 | 24. 6. 10 | 24. 10. 10. | 25. 3. 10. | 25. 8. 11. | 26. 1. 12 | 26. 6. 10 | 26. 11. 10 | | 입주지정일 |
| 84A | 101동 2,3,4호 102동,103동, 1,2,3, 4호 104동 1,2,3,4,5호 105동 1,2,3호 106동 2,3호 | 457 | 1층 | 19 | 740,540,139 | 297,659,861 | 1,038,200,000 | 103,820,000 | 103,820,000 | 103,820,000 | 103,820,000 | 103,820,000 | 103,820,000 | 103,820,000 | 103,820,000 | 103,820,000 | 207,640,000 |
| | | | 2층 | 19 | 740,540,139 | 308,659,861 | 1,049,200,000 | 104,920,000 | 104,920,000 | 104,920,000 | 104,920,000 | 104,920,000 | 104,920,000 | 104,920,000 | 104,920,000 | 104,920,000 | 209,840,000 |
| | | | 3층 | 21 | 740,540,139 | 318,659,861 | 1,059,200,000 | 105,920,000 | 105,920,000 | 105,920,000 | 105,920,000 | 105,920,000 | 105,920,000 | 105,920,000 | 105,920,000 | 105,920,000 | 211,840,000 |
| | | | 4층 | 21 | 740,540,139 | 328,659,861 | 1,069,200,000 | 106,920,000 | 106,920,000 | 106,920,000 | 106,920,000 | 106,920,000 | 106,920,000 | 106,920,000 | 106,920,000 | 106,920,000 | 213,840,000 |
| | | | 5~9층 | 100 | 740,540,139 | 338,659,861 | 1,079,200,000 | 107,920,000 | 107,920,000 | 107,920,000 | 107,920,000 | 107,920,000 | 107,920,000 | 107,920,000 | 107,920,000 | 107,920,000 | 215,840,000 |
| | | | 10~20층 | 176 | 740,540,139 | 348,659,861 | 1,089,200,000 | 108,920,000 | 108,920,000 | 108,920,000 | 108,920,000 | 108,920,000 | 108,920,000 | 108,920,000 | 108,920,000 | 108,920,000 | 217,840,000 |
| | | | 21층 이상 | 101 | 740,540,139 | 356,659,861 | 1,097,200,000 | 109,720,000 | 109,720,000 | 109,720,000 | 109,720,000 | 109,720,000 | 109,720,000 | 109,720,000 | 109,720,000 | 109,720,000 | 219,440,000 |
| 84B | 101동 1호 105동 4호 106동 1,4호 | 53 | 1층 | 4 | 740,976,161 | 283,923,839 | 1,024,900,000 | 102,490,000 | 102,490,000 | 102,490,000 | 102,490,000 | 102,490,000 | 102,490,000 | 102,490,000 | 102,490,000 | 102,490,000 | 204,980,000 |
| | | | 2층 | 4 | 740,976,161 | 294,923,839 | 1,035,900,000 | 103,590,000 | 103,590,000 | 103,590,000 | 103,590,000 | 103,590,000 | 103,590,000 | 103,590,000 | 103,590,000 | 103,590,000 | 207,180,000 |
| | | | 3층 | 4 | 740,976,161 | 304,923,839 | 1,045,900,000 | 104,590,000 | 104,590,000 | 104,590,000 | 104,590,000 | 104,590,000 | 104,590,000 | 104,590,000 | 104,590,000 | 104,590,000 | 209,180,000 |
| | | | 4층 | 4 | 740,976,161 | 314,923,839 | 1,055,900,000 | 105,590,000 | 105,590,000 | 105,590,000 | 105,590,000 | 105,590,000 | 105,590,000 | 105,590,000 | 105,590,000 | 105,590,000 | 211,180,000 |
| | | | 5~9층 | 17 | 740,976,161 | 324,923,839 | 1,065,900,000 | 106,590,000 | 106,590,000 | 106,590,000 | 106,590,000 | 106,590,000 | 106,590,000 | 106,590,000 | 106,590,000 | 106,590,000 | 213,180,000 |
| | | | 10~20층 | 11 | 740,976,161 | 334,923,839 | 1,075,900,000 | 107,590,000 | 107,590,000 | 107,590,000 | 107,590,000 | 107,590,000 | 107,590,000 | 107,590,000 | 107,590,000 | 107,590,000 | 215,180,000 |
| | | | 21층 이상 | 9 | 740,976,161 | 342,923,839 | 1,083,900,000 | 108,390,000 | 108,390,000 | 108,390,000 | 108,390,000 | 108,390,000 | 108,390,000 | 108,390,000 | 108,390,000 | 108,390,000 | 216,780,000 |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분양가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공통주택)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 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주택형의 해당 세대주거 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납부일자는 예정일이라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개인적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 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은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함.
-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 또는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입주자 임의시공을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약식표기) | | 84A | 84B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5 | 1 | 6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4 | 0 | 4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5 | 0 | 5 |
| | 장애인 | 10 | 1 | 11 |
| | 중소기업 근로자 | 8 | 1 | 9 |
| | 철거민(이주대책 대상자) | 15 | 0 | 15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성남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16 | 2 | 18 |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16 | 1 | 17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57 | 6 | 63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9 | 1 | 1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60 | 6 | 66 |
| 합 계 | | 205 | 19 | 22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급기준 |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09 368 2112 576">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 | | 구분 | | 처리방법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 |
| 구분 | | 처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 | | | | | | | | | | | | | | | | | | | |
|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자격요건 |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95 1262 2063 148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도 인터넷(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접수가 원칙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14:00까지 접수 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 합니다.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_(성남 북정1지구 B3블록 이주대책 대상자 15세대 포함) : 50세대

| 구 분 | 내 용 |
|-----------------|--|
| 신청자격 |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p> <p>- 이주대책 대상자로 성남북정1지구 B3블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p> <p>※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p> <p>※ 추천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도부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철거민(이주대책 대상자) : NH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단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순서 :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 ② 배점 <table border="1" data-bbox="295 502 2038 1332"> <thead> <tr> <th rowspan="2">평점요소</th> <th rowspan="2">총 배 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 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미성년 자녀 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td> </tr> <tr> <td>미성년 자녀 3명</td> <td>35</td> </tr> <tr> <td>미성년 자녀 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td> </tr> <tr> <td>자녀 중 영유아 2명</td> <td>10</td> </tr> <tr> <td>자녀 중 영유아 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rowspan="2">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3">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5</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 <td rowspan="3">15</td> <td>10년 이상</td> <td>15</td> <td rowspan="3">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도로 본다.</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5</td> </tr> <tr> <td>입주자저축 가입기간(6)</td> <td>5</td> <td>10년 이상</td> <td>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td> </tr> </tbody> </table> <p data-bbox="295 1340 2038 1452">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p> | | | | 평점요소 | 총 배 점 | 배점기준 | | 비고 | 기준 | 점 수 | 계 | 100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3명 | 35 | 미성년 자녀 2명 | 25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한부모 가족 | 5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평점요소 | 총 배 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 | 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성년 자녀 2명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부모 가족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사·도로 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p>■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p>■ 당첨자 선정기준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data-bbox="309 475 2107 842">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각 단계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은 다음 단계의 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②순위</p> <table border="1" data-bbox="309 986 2107 1098">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p>■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p>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p>■ 소득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table border="1" data-bbox="309 1449 2107 1513"> <tr> <td>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05.</td> <td>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d>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 </tr> </table> |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순위 | 내용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05.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05.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 적용)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9,806,313원 | 8,248,468원~ 11,547,854원 | 8,775,072원~ 12,285,099원 | 9,563,283원~ 13,388,595원 | 10,351,494원~ 14,492,090원 | 11,139,705원~ 15,595,586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11,207,214원 | 9,898,161원~ 13,197,547원 | 10,530,086원~ 14,040,114원 | 11,475,939원~ 15,301,251원 | 12,421,793원~ 16,562,389원 | 13,367,64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colspan="2">건축물 종류</td> <td>지방세정 시가표준액</td>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 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 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344 448 2069 1294"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점항목</th> <th colspan="2">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 rowspan="9"></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td> <td rowspan="4">35</td> <td rowspan="4"></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8">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8">17</td> <td rowspan="8">본인</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32 |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 이상 | 35 | 3명 | 20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무주택기간 | 32 |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0명 | 5 | 4명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명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24 726 2116 1109"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table border="1" data-bbox="324 1396 2116 1460"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05.</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td> </tr> </table>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p> |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05.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단계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인 가구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05.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 적용)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 | 130% 이하 | ~9,105,862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13,456,941원 | ~14,481,615원 |
|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 | 130% 초과 160% 이하 | 9,105,863원~ 11,207,214원 | 10,723,008원~ 13,197,547원 | 11,407,593원~ 14,040,114원 | 12,432,268원~ 15,301,251원 | 13,456,942원~ 16,562,389원 | 14,481,61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1인 가구 | 160% 이하 | ~11,207,214원 | ~13,197,547원 | ~14,040,114원 | ~15,301,251원 | ~16,562,389원 | ~17,823,526원 |
|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일반공급 신청자격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 예치금액과 관련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table border="1" data-bbox="358 574 2094 726">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정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정제 / 추첨제 적용 비율 <table border="1" data-bbox="358 1005 2094 1093"> <thead> <tr> <th>구 분</th> <th>가정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td> <td>70%</td> <td>30%</td> </tr> </tbody>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358 1165 2094 1508">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7">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body> </table> | 구 분 | 가정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 70% | 30%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구 분 | 가정제 | 추첨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 70%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 35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0명 | 5 | 4명 | 25 |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본인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배우자 |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이가입 | 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 1년 미만 | 1 | 2년 이상 | 3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따라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이 가입기간 점수표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분 | 내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차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

| | |
|-----------------------|---|
| | <p>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확인방법 : ①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②가족관계증명서, ③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④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 ①주민등록표등·초본, ②가족관계증명서, ③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 ③입주자지속 가입기간 | 입주자지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 ④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단계 | 비율 | 내용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지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 1호 또는 1세대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청약신청 일정, 신청방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및 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4. 4. 15. (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정보취약계층 :분양사무실 10:00~1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분양사무실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분양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80 케이알산업 위례사옥 1층 |
| 일반공급 | 1순위 | 2024. 4. 16. (화) 09:00~17: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 | 2순위 | 2024. 4. 17. (수) 09:00~17:30 | |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실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분양사무실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주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없이 신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인터넷취약 장애인 등) 방문청약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분 | 구비사항 | | | |
|--|---|--|---------|-----------|
| 일반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서류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서류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발표 일정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4. 4. 24.(수)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4. 4. 26.(금) ~ 2024. 5. 3.(금) (10:00~16:30)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80 케이알산업 위례사옥 1층 |
| 일반공급 | 1순위 2순위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분양사무실(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순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분양사무실에 내방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통보예정이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를 받지 못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 | |
|-----------|--|---|
|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2024. 4. 24.(수) ~ 2024. 5. 3.(금) (10일간) | |
| 인터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4. 4. 24.(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2항(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 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자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전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 예비 입주자 추첨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모든 제반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임.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등(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불가합니다.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서류 | ○ | | 신분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원)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청약출로 청약한 경우 생략(단, 국외취업(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 필수 제출)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청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성남시)으로 당청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 | ○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 (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대책 대상자) | ○ |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같음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 다자녀 특별공급 | ○ | | 주민등록표 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경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05.)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 | |

| | | | | | |
|---------------|---------|------------------------|-------------------|---|--|
| | | | | | 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임신의 경우(양식 : 분양사무실 비치) |
| | ○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자격요건확인서 | 본인 | |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분양사무실 비치)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로 산정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 | | 직계비속 | |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 | ○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 | • 임신의 경우(양식 : 분양사무실 비치) |
| | | | |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전원 |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양식 : 분양사무실 비치) |
|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함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
| | | |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및 직계존속 |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상세) | 직계존속 | |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해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하기 위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 |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자격요건확인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분양사무실 비치) |
|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시 가구원수 포함할 경우 |
|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 | ○ | | 소득증빙서류 |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전원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분양사무실 비치) |
| | ○ |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전원 |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함 |
| | ○ |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 | ○ |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 | ○ |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양식 : 분양사무실에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 | | 해외근무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전원 |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본인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기간지정으로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직계존속 |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일반공급 | | ○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피부양 직계존비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포함)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 (1~3점) (청약홀) 청약홀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안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 당첨사실 확인서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홀) 청약홀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 대리인 제출시 추가서류 (본인외 모두 제3자)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공급신청자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자격확인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 | ○ | 위임장 | 공급신청자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양식 : 분양사무실 비치) |
| | ○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서명)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원)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실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문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①,② 해당직장 |

| | | | |
|----------|--|--|--------------------------------|
| |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재직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①, ②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①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명 |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재표 ④ 재직증명서 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① 세무서 ② 등기소 ③, ④, ⑤ 해당직장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① 해당직장, 세무서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 분양사무실에 비치 ② 세무서 |
| | 기타(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 거주지 관할구역고용센터 ② 해당직장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와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자격검증 제출서류(청약신청자 본인)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 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납입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 부분에 한합니다.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① 세무서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세무서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함.

[표2]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증빙 제출서류

|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 ①, 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포함) |
| |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
| | 추가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해당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표3]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 |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본인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
| | ○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혼인관계여부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 본인 |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 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
| 가정제 당첨자 | ○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 | ○ | 주민등록초본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혼인관계증명서 | |
| | ○ |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상세) | |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 배우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내 세대원 및 자녀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여부 기간 확인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 ○ |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상기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VII 계약체결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4. 5. 7.(화) ~ 2024. 5. 10.(금) (10:00~16:30) | 당사 분양사무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80 케이알산업 위례사옥 1층)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신청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청약 당첨이 제한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및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상기 사전경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 체결 전 기간 내에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 구 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해당자) | | | |
| 본인 계약시 |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 | ○ | | 신분증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인 절대 불가함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 | ○ | | 인감도장 |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 |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 (홈페이지 서식 게시) |
| | ○ | 인지세(전자수입인지) |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아파트 공급계약, 발코니확장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 |

| | | | | | |
|---------------------|---|--|-------------|-----|---|
| 제3차 대리계약시 (본인이외)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 | ○ | |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 위임장 | -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실에 비치)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접수불가)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가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모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금된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설치장소와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동선으로 인한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우리은행 | 1005-104-612891 | ㈜한국토지신탁 |

• 상기 계좌는 관리신탁사인 (주)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예금계좌이며,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상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정당한 분양수입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상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이후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위탁사,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위탁사 포함)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이 있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 예정이고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사업주체가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등의 시장상황에 따라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한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20% 완납 이후 중도금 1~6회차 60%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후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선납할인 및 연체 안내

- 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한 경우 연 2.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며,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서 제4조 2항에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계약금(20%) | 중도금 1회차(30%) | 중도금 2회차(30%) | 잔금(20%) |
|-----|-------------|-----------|--------------|--------------|-----------|
| | | 계약시 | 2025-05-08 | 2026-05-08 | 입주지정일 |
| 84A | 8,700,000 | 1,740,000 | 2,610,000 | 2,610,000 | 1,740,000 |
| 84B | 5,550,000 | 1,110,000 | 1,665,000 | 1,665,000 | 1,110,000 |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하단 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 | 1005-504-616403 | ㈜한국토지신탁 |

- 상기 계좌는 자기관리사인 (주)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예금계좌이며,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상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정당한 분양수입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급계약서 제4조의 연체료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상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확장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① 주택형별 단위세대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② 비확장세대의 발코니에는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③ 비확장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비확장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는 배관 노출 및 하부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⑤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 확장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비확장 세대는 거실 우물천장과 아트월(기본형)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⑦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PVC창호가 미설치되며 외부창호 및 발코니 난간의 높이·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하거나 그 후 개별적인 발코니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이 없고,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일으킬 수 있음에 대해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민원발생시 민원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②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후 계약자는 발코니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별시공한 부위의 하자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원인규명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발코니 창틀을 개별시공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결로 및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에어커튼막 배관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틀 및 유리, 기타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세대일 경우 비확장부분과 접한 확장세대내의 부분의 단열재추가설치로 인하여 확장세대는 천장형에어컨 위치(추가선택품목선택 시), 우물천장 깊이, 커튼상자 깊이, 등박스 위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되고, 천장 높이 일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세대일 경우 비확장부분과 접한 확장세대는 비확장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시 이중창틀,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틀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공사비

(1) 가구 및 마감재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선택 | 품 목 | 주택형 | 내 용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 (10%) | 잔금 (80%) |
|------|---------|-----------|---|---|------------------------|--------------------|--------------------|------------------------|
| | | | | | | 계약시 | 2025-05-08 | 입주지정일 |
| 가구류 | 1 | 현관 팬트리 | 전타입 | 시스템 선반 | 750,000 | 75,000 | 75,000 | 600,000 |
| | 2 | 복도 팬트리 | | 시스템 선반 | 900,000 | 90,000 | 90,000 | 720,000 |
| | 3 | 냉장고장 | |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오픈규격 : 폭1100 * 높이1950 - 2개소)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 | 4 | 파우더 | | 화장대 / 서랍장 | 1,500,000 | 150,000 | 150,000 | 1,200,000 |
| | 5 | 침실 불박이장 | | 침실2 불박이장 | 1,600,000 | 160,000 | 160,000 | 1,280,000 |
| | 6 | 홀바 장식장 | 84A | 주방 홀바장 / 인조대리석 상판 (주방스타일업 A 선택 시 엔지니어스톤 상판) | 2,600,000 | 260,000 | 260,000 | 2,080,000 |
| | 7 | 주방 아일랜드장 | 84B | 아일랜드장 / 인조대리석 상판 (주방스타일업 A 선택 시 엔지니어스톤 상판) | 1,400,000 | 140,000 | 140,000 | 1,120,000 |
| | 8 | 알파룸 시스템가구 | 84A 84B | 시스템 가구 + 서랍장 | 2,580,000 2,680,000 | 258,000 268,000 | 258,000 268,000 | 2,064,000 2,144,000 |
| 스타일업 | 9-1 | 거실 스타일업 | 전타입 | ·거실 아트월 : 포세린타일 → 세라믹 박판타일 | 2,000,000 | 200,000 | 200,000 | 1,600,000 |
| | 9-2 | 복도 스타일업 | | ·복도 1면 : 벽지 → 시트알판 | 990,000 | 99,000 | 99,000 | 792,000 |
| | 10 | 바닥 스타일업 | 84A | ·강마루 → 광폭 강마루 (전체 바닥에 적용) | 2,940,000 | 294,000 | 294,000 | 2,352,000 |
| | | | 84B | | 2,850,000 | 285,000 | 285,000 | 2,280,000 |
| | 11 | 주방 스타일업 A | 84A | ·주방상판 : 인조대리석 → 엔지니어스톤 ·주방벽체 : 도기질타일 → 엔지니어스톤 | 1,980,000 | 198,000 | 198,000 | 1,584,000 |
| | | | 84B | | 1,880,000 | 188,000 | 188,000 | 1,504,000 |
| | 12 | 주방 스타일업 B | 84A | 주방일반조명 → 라인형 매입조명, 우물천장 시공, 무선충전 콘센트 | 590,000 | 59,000 | 59,000 | 472,000 |
| 84B | | | 주방일반조명 → 라인형 매입조명, 무선충전 콘센트 | 500,000 | 50,000 | 50,000 | 400,000 | |
| 13 | 조명 스타일업 | 전타입 | ·거실 직부등 → 라인조명(디밍) 및 간접무드등 ·안방,침실1,침실2 직부등 → 간접무드등 포함 | 980,000 | 98,000 | 98,000 | 784,000 | |
| 생활의 | 14 | 스마트복합환풍기 | 전타입 | 공용욕실/부부욕실 : 환기/온풍/제습 기능 | 1,090,000 | 109,000 | 109,000 | 872,000 |
| | 15 | 열차단필름 | | 거실, 침실1, 침실2 → 이중창 중 1면 | 1,950,000 | 195,000 | 195,000 | 1,560,000 |
| | 16 | 안전방충망 | | 창호 방충망 부위 | 2,590,000 | 259,000 | 259,000 | 2,072,000 |
| | 17 | 현관중문 | | 원슬라이딩 중문 | 890,000 | 89,000 | 89,000 | 712,000 |
| | 18 | 욕실 비데 | | 공용 욕실 비데 | 290,000 | 29,000 | 29,000 | 232,000 |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형별 개별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가능합니다.(단,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불가합니다)

※ 주방스타일업 A 또는 B 미선택 시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 주방 벽부는 타일로 시공됨.

※ 안전방충망 미선택시 일반방충망이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안방욕실 비데는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 선택시 하부레일로 인해 바닥 단차(약3MM)가 발생합니다.

※ 일부 유상옵션 품목 선택시 기본 마감재로 제공되는 벽지의 종류, 색상, 문양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마감재리스트 및 분양사무실을 내방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 스타일업 B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은 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선택유무에 따라 일부 콘센트, 스위치 및 조명기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콘센트 등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품목 미선택 시 콘센트, 스위치 등 별도의 전열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84A 주택형 흉바 장식장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흉바 장식장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설치되며 주방스타일업A 선택시 상판은 엔지니어스톤으로 설치됨

※ 84B 주택형 주방 아일랜드장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설치되며 주방스타일업A 선택시 상판은 엔지니어스톤으로 설치됨

(2) 가전옵션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선택 | 적용사항 | 주택형 | 제조사 |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 (10%) | 잔금 (80%) |
|----|--------------------------------------|----------|-----|---|-----------|-----------|------------|-----------|
| | | | | | | 계약시 | 2025-05-08 | 입주지정일 |
| 19 | 인덕션 쿡탑(3구) | 84A, 84B | 쿠첸 | CEN-IF3A0NBA | 600,000 | 60,000 | 60,000 | 480,000 |
| 20 | 복합오븐 | | LG | 디오스 MZ385EBT1 | 620,000 | 62,000 | 62,000 | 496,000 |
| 21 | 오브제 냉장고 + 오브제 김치냉장고 + 냉장고장 + 인출식 수납장 | | LG | BC4S1AA1/BC3K1AA1. 냉장/냉동 : 오브제(600L 대) 김치:오브제(320L 대) | 7,600,000 | 760,000 | 760,000 | 6,080,000 |
| 22 | 식기세척기 | | LG | 디오스(DUB22SB2) | 1,490,000 | 149,000 | 149,000 | 1,192,000 |
| 23 | 의류관리기 | | LG | S5BBPU | 2,100,000 | 210,000 | 210,000 | 1,680,000 |

※ 상기 가전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모델은 홈페이지내 사이버전본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계약자의 취향에 따른 색상 및 모델사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단, 오브제 냉장고/김치냉장고는 컬러대안 3가지 중 택1)

※ 추가선택품목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선택안 | 설치개소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제품번호 (제조사 선택가능) | |
|-----|-----|------|------------------|-----------|----------|------------|-----------|--|--|
| | | | | | 계약시 | 2025-05-08 | 입주지정일 | LG | 삼성 |
| 84A | 기본 | 3대 | 거실+주방+안방 | 6,200,000 | 620,000 | 620,000 | 4,960,000 | 거실 : R-W0720C2WP 주방 : R-W0200C2WP | 거실 : AJ02BN1PBC1 주방 : AJ020BN1PBC1 |
| | 전체 | 5대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9,230,000 | 923,000 | 923,000 | 7,384,000 | | |
| 84B | 기본 | 3대 | 거실+주방+안방 | 6,320,000 | 632,000 | 632,000 | 5,056,000 | 안방 : R-W0320C2WP 침실1,2: R-W0200C2WP | 안방 : AJ032BN1PBC1 침실1,2: AJ020BN1PBC1 |
| | 전체 | 5대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9,600,000 | 960,000 | 960,000 | 7,680,000 | | |

(4)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우리은행 | 1005-604-606047 | (주)한국토지신탁 |

- 상기 계좌는 관리신탁사인 (주)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예금계좌이며,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상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정당한 분양수입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상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 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비확장시 시공상의 문제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 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거실/복도 스타일업 선택시 마감재 부착을 위해 거실, 복도의 유효폭이 소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사항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기능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추가선택품목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 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 납부)
- 타일의 특성상 무늬,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 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중, 위치, 욕실 천장 점검구 및 환풍기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사이버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냉장고장은 유상옵션 선택시에만 제공되며 가전옵션(오브제 냉장고/김치냉장고) 선택시 제공되는 냉장고장과는 상이하니 확인후 계약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발주 및 착수 이후 추가선택품목의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추가선택품목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금액은 거실스탠드형,안방, 침실1, 침실2 벽걸이형의 에어컨 설치용 냉매배관 및 콘센트를 미시공하는 조건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기타 가전제품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 침실1, 침실2는 벽걸이형의 냉매배관 및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동일 모델(상성기준) 연출용으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추가선택품목 시스템 에어컨(LG/삼성 택1)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타입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사이버 건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채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한 실외기 그릴 색상으로 시공될 수 있음)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입니다.

|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
|------|---|--|
| 바닥재 | 마루, 현관바닥 타일,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인조석),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타일(타일 붙임 몰탈 포함) | 수공간 바닥 방수 및 배수 슬리브바닥난방,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벽 |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아트월, 주방 벽 타일/인조석(타일 붙임 몰탈 포함),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도장, 걸레받이 | 경량벽체, 콘크리트 먼처리, 콘센트 및 스위치의 배관배선, 친환경도료(확장전 벽면에 적용) |
| 천장 | 천장지, 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실 도장, 천장/우물천장 몰딩 및 마감재 | 천정틀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먼처리(해당부위), 친환경도료(확장전 천장면에 적용) |
| 일반가구 | 신발장, 기타 수납선반 | 미설치 |
| 주방 | 주방/식당 가구 일체(상판, 찜크볼 및 악세사리 일체, 선반),벽타일/인조석, 주방 가전류(가스쿡탑, 렌지후드) 수전류, 주방TV | 소방관련시설, 주방배기 덕트, 설비배관(급,배수,난방), 정보통신배관, 배선 및배선기구 |
| 욕실 | 콘센트,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실 환풍기, 벽/바닥 타일, 천장재, 인조석,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하부틀, 코킹 | 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 배선 |
| 창호 | 목창호 문틀/문짝/문선/손잡이 및 경첩(하드웨어 일체) | 목창호 가를, 문틀사춤, 발코니 내부창호,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 공간 도어, 실외기실 도어 |
| 조명기구 |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 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월패드, 매입등기구 |
| 기타 | 수전류(세탁수전, 발코니수전 등) |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 구분 (주거전용면적) | 84A (084.9200A) | 84B(084.9700B) | 비 고 |
|------------------|-----------------|----------------|-------------------------|
|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 34,105,000 | 34,681,000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상층건축비의 15% |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품목은 해당 사이버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법에 의한 구조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람, 공사기한은 소용,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 되어진 통풍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된 시설은 적법한 관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계약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IX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당청자는 계약체결 시 분양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인쇄상 오류 및 오타자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 상충 부분이 있을 시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청약 및 계약 신청 전 반드시 현장여건, 주변 유해시설, 마감재리스트,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이며 이를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맹꽁이 등) 출현으로 인한 서식지 보호,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를 포함한 인근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 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 예정 시점과 다를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임.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매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은 거소 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 도중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내용 중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거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용면적(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추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는 추후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서 분실신고(분실신고접수증 제출) 및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사전방문 예약을 하신 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함. (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유틸리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은 입주 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주민공동시설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 운영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인대표회의 구성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인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청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청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분양홍보물

- 각종 광고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및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따라 시공됨.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 사인물, 홈페이지, 카탈로그(공급안내)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분양자료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제작 시점, 여건 변화 반영 정도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주방가구 및 수납공간 등)와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자료, 공급안내 등)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 당 현장의 견본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되며 84A 주택형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욕실 거울, 욕조,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불박이장, 주방가구, 주방상부장 등은 인허가 과정 또는 본 공사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사업승인도서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모형, 인허가 도서,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은 확정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욕실 거울, 욕조,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불박이장, 주방가구, 주방상부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건축마감재시공(몰딩, 걸레받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파지타일로 시공될 수 있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및 기타 마감재(안방 침실 벽체 판넬) 등은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추가선택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사무실에 확인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추가선택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및 마감재 판넬 이음부위의 위치와 상세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설치 마감재가 단종·품귀 시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및 석재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내 시공된 바닥마감자재는 광폭강마루이며, 광폭강마루 옵션 미선택시 바닥재의 시공은 기본 강마루로 시공됨.
-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 마감 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및 단지 레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세대 내 주방가구는 확정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 가구가 상이함.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유도등 및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은 추가 선택품목으로 유상옵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됨.

- 사이버 견본주택의 세대 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시 제품사양,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설비기기 :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 홀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액세서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 보일러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월패드,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세대분전반, 통신 단자함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됨. 또한,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세대 천정고는 2.3m로 시공되며 그에 따라 가구 높이 및 마감 높이가 변경되며 본 공사시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관해 확인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감 색상 및 패턴은 본시공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 (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 가전류(워시타워, 커피머신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임.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외벽의 리브 형태 및 지붕 모양 등) 및 부대 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 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달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됨.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영상은 분양승인 전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및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개발계획 및 단지 외부여건

-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연결노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혹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기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공원, 완충녹지 등) 간 레벨 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공원은 향후 LH의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부지의 높이(레벨), 여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외부 남측에 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따라 부지 높이(레벨), 여건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단지 내 공원 연결 통로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 위치는 도로 및 철도, 항공 소음에 직간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와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소음방지시설 설치 등)을 협의함.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성남북정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준공시까지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에서 지구계획, 교통영향평가, 제영향평가(환경, 재해, 학교 등) 협의내용 등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토지 및 지구내 타필지의 토지이용계획(면적, 획지, 형상, 위치, 용도 등) 및 토지에 대한 제한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용지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도로, 하수, 가스, 근린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해당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안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냉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체·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경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와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소음방지시설 설치 등)을 협의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인근 도로 및 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통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 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사이버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접대지, 도로, 녹지, 기타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해당관청의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 녹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용지 등이 계획됨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일부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도로에 인접한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동쪽에 8호선 철도가 위치하고 있어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로부터 동쪽 약300m 위치에 변전소, 주유소, 충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 300m 위치에 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성남북정1지구 중앙에 위치한 학교시설(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설립여부등은 교육부 심사절차를 통해 확정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개교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이 조성되며, 홍수 유출 저감을 위한 영구저류시설이 북측에 연접하여 위치하므로 악취 및 벌레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버스공영차고지 부지 확보가 불가한 여건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지구내 버스공영차고지 부지 미확보시 단지 인근에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 투입이 불가함을 고지하며, 이에 따라 입주 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한 위례지구에 열병합시설, 가스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변전소, 지장송전선로 C/H부지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설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북정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각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학교시설의 설립여부 등은 교육부 심사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개교일정, 학생배치계획 등이 결정됨.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전입 현황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이 변경(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으며, 학교설립 대상학교가 조정될 수 있음
- 공원, 녹지, 도로와 인접해 있는 주거동은 단지 내·외의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법정보호종(맹꽁이 등)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법정보호종 포획 이주 등으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헨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옹벽 및 화계,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사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사 아파트의 현장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 설계 및 단지 내부여건

- 건물 외부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추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방충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2 제4항에 의거 옥상층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과정에서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정과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보관소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보안등, 가로등, 공원, 경관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불빛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CTV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 합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 뿔침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조명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조형물 상부에 도장 미 시공)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업자는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지구'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지붕, 벽면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빛반사 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의 위치, 수량, 용량 등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 및 본인증 진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만족하는 기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업자는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 '주택성능등급' 등의 예비인증을 받은 현장으로 본공사시 '본인증' 수행을 위해 동일등급 내에서 세부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업자는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의무기준 및 권장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으나, 이후 진행된 '분양가심사'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부위 및, 자재 등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명칭, 동 번호, BI(Brand Identity) 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106동 9m~20m 전면에 L형 옹벽(높이 1m~5.6m/ 길이 110.4m)과 104동 3,4호라인 22m 후면에 L형 옹벽(높이 1m~4.6m/ 길이 21.9m)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 105동 38m 후면과 106동 1호라인 5m 좌측면에 조경석(높이 0.5m~2.5m/ 길이 100.3m+11.2m)이, 102동 22m 전면에 조경석(높이 0.5m~2.5m/ 길이 102.3m)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 104동 4호라인 19m 전면과 3호라인 30m 전면에 조경석(높이 0.5m~2.5m/ 길이 103.6m)이, 101동 1호라인 4m 좌측면과 3호라인 8m 후면에 조경석(높이 0.5m~2.5m/ 길이 22.7m)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지면의 단차 및 경사 등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부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아파트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의 개폐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마감사양은 ‘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됨
-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에 환기 또는 채광창이 설치되며 층, 동별 타입별로 여건에 따라 창이 없거나 개폐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세대 현관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마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 간섭이 가능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아파트 배치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시설, 정원 및 수목의 위치는 시공과정(현장여건) 등에 따라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및 단체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엘리베이터 승강로 및 기계실과 인접되어 승강로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비상발전기의 주기적인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계단의 형태/크기/위치/마감 등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본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영구배수 및 흠막이차수 공법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동등의 성능이 확보가능한 공법 및 전문업체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또는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이로인한 조망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등이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근,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야간경관심의(자문) 등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당 단지의 주동외관색채, 외벽줄눈, 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지붕 및 측벽 태양광 집광판의 위치 및 각도,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단지 출입구 문주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물딩, 창틀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 및 추가되어 시공될 수 있음. 또한,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 시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심리적 불안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 관련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663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3대, 총 666대 (경차 및 장애인 주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역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 ~ 지하3층까지 계획되어 있고,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지하2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하는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약 2.7m으로 택배차 진입이 가능하며(지하3층 층고는 2.3m) 지하주차장 내 일부 구간에서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이유로 통행이 제한 될 수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10개, 완속 37개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및 계단 위치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차단기의 기능, 모양, 색상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별로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주동출입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 시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진입동선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지하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까지의 동선거리, 주동 출입 방법 등이 다름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까지의 동선, 거리, 충전시설의 종류,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 등 기타 장비의 주기적인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모든 주동들이 연결된 구조로 주차대수 및 동별 주차배분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및 환 등의 설비가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환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이용 시 급배기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구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환기용 그릴과 제연팬류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시공성 및 성능개선 향상 등의 이유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주동 주차의 형평성 및 주차계획에 대해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별 주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운영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관계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의 충전방향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편물 수취함은 지상 1층의 출입구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본 공사 시 위치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의 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물고임 또는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임.
- 지하주차장 최하층 및 중간층 방수와 흙에 접하는 외벽의 방수는 방수층의 보호, 품질확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수공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 수정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와 성남시 수정구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단지 내 행복주택 세대와 공공임대주택 세대 입주민을 포함한다.)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외부에서 배정될 수 있으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단지의 입주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 11조에 따라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민 의견 수렴 및 의결 절차 등을 통하여 단지 내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의 운영 방안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과 외부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휴게공간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지하에는 피트니스와 골프연습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의 종류와 수량은 홈페이지 커뮤니티CG 참조.
- 단지 내 계획된 부대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각동의 세대를 고려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이나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우수수 맨홀이나 집수장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과 조엽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근린생활시설 전용 지상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사이버 견본주택에 건립되지않는 주택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샘플하우스로 지정하여 샘플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 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욕조 포함)/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붙박이장 가구후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기타 마감은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함.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하부장이 설치됨.
- 세대내 문 및 창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평면배치 상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와 벽체가 접하는 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을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유리, 창틀)의 사양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난간과 창호샷시, 유리의 사양 및 형태는 기능 또는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 시공 시 형태, 재질, 하드웨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동체감지기는 1, 2층, 최상층에 한하여 설치됨.
- 배선기구 등 위치가 실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 및 높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가스배관은 주방 다용도실 내 노출형으로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통해 인덕션을 설치한 세대의 경우 세대내 가스배관은 노출형으로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홈네트워크, 조명기구, 배선기구, 에어컨 냉매 박스,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승인 도서 및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의 기능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음.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해야 함.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는 배수를 위한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우배수 이종관 등) 및 바닥 드레인온 천정 또는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실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를 불가함.
- 실외기실은 동파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배수구가 미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한 응축수 및 우천 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함.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발코니는 비 단열 공간이며 세탁실 등은 비난방 공간으로 단열에 취약하므로 설치된 수전, 배수관 등이 겨울철에 동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주방 싱크장 등 고정 가구장 하부 바닥은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바닥 및 욕조, 샤워부스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세대내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될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 점검구의 위치는 현장여건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유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공급을 위한 가스점압기의 부지 내 설치여부, 설치위치 및 제반 사항이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유무는 입점자에게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내부순환모드(공기청정모드)가 지원되지 않음.
- 하향식 피난구 부분에는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공간의 외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함.

- 실제 시공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며, 각 동별로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사이버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간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크기 및 위치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채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피난 대피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비 난방 공간임.
- 각 세대의 E/V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ABS도어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의 (예: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 천연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 차이가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여,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동일한 타입의 일부 해당세대는 배치상 축벽세대 또는 간벽세대의 외벽 단열재 시공 유무에 따라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가로 폭과 바닥면적 실외기실 창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미확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발코니 선출동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복도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출동이 사이버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사이버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충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후드렌지 상부의 가구장내부에는 법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바 이로 인해 가구 폭 및 일부 공간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같은 주택 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 유무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자재의 특성상 사이버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상이할 수 있음.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강화대리석, 인조대리석, 도배지, 시트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함.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주택법」 제54조 제7항에 의거 동법 동조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세대 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뒀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TV, 벽걸이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TV설치 방법 및 하중에 따라 필요시 별도 보강 하여 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 사이버 주택전시간, 팽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인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불가할 수 있음
- 거실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스탠드형, 안방,침실1,침실2는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안방,침실1,침실2의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해당 없음)
- 실외기실에는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소화용스프링클러, 하향식피난구 등이 천장에 설치되며, 다용도실 및 발코니와 같이 별도의 마감재 없이 도장 시공됨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강제 급·배기를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공기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 등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관련 배관이 노출 시공 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제조사별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조사별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대용량의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및 건조기 등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조사별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사이즈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세탁실 및 발코니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컨으로만 점등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오피션)은 무선 리모콘을 통해 작동되며 세대 내 월패드와 연동되지 않고 실내기를 통해 조작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및 기계환기 배관으로 인해 침실 커튼박스 길이, 길이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 설치로 인해 층별로 기계환기 유니트의 설치위치가 상이함
- 직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최하층 등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갤러리창의 구조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전원용 콘센트 에 한하여 설치됨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 층수 등에 따라 승강기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옵션선택에 따라 등기구, 배선기구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
- 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하며 본 공사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사이버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시트알판, 주방벽마감, 가구 등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때, 거실 아트월타일 및 타일 부착두께 등은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인조대리석, 타일, 가구 등의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탁이 없으므로 사용자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음.
-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음.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간섭받을 수 있음.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음.

X 기타사항

입주자 사전방문안내

- 입주자의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등의 전유부분 및 건물 공용부분

입주예정월 : 2027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개시일 2개월 전 통보함)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추후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전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완납 후 가능하며 이 경우 인테리어 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실, 경비실 2개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실외 운동시설 등

지하주차장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제29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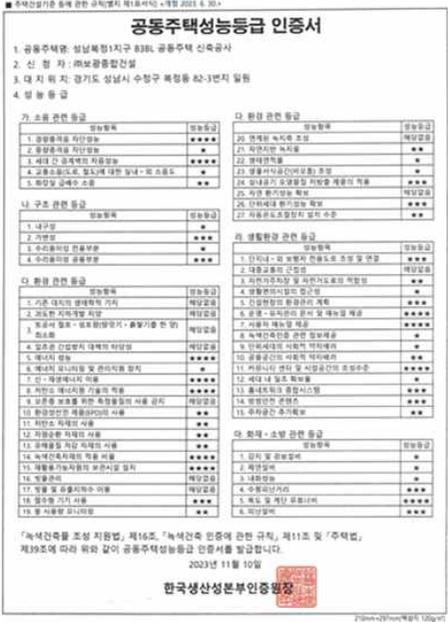
| 주차장 차로의 폭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메인통로 7,000mm / 서브통로 6,300mm | 지하 2층 2,700mm / 지하 3층 2,300mm | 2,700mm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 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 성남북정1지구 8381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청자: (주)보통종합건설
3.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82-3번지 일동
4. 필용등급

가. 주요 관련 등급

| 영능등급 | 영능등급 |
|---------------------------|------|
| 1. 공동주택의 위생성능 | ★★★★ |
| 2. 공동주택의 안전성능 | ★ |
| 3. 세대 간 공적벽의 차음성능 | ★★★★ |
| 4. 공동주택의 열노출에 대한 실내-외 온도차 | ★ |
| 5. 화재발생 억제성능 | ★ |

나. 구조 관련 등급

| 영능등급 | 영능등급 |
|----------------|------|
| 1. 내구성 | ★ |
| 2. 가변성 | ★★ |
| 3. 구조물간의 상호연계성 | ★ |
| 4. 수직방향의 공동방지성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영능등급 | 영능등급 |
|---------------------------------|------|
| 1. 기후 내성의 설계적 가치 | ★★★★ |
| 2. 과학적 시공방법 적용 | ★★★★ |
| 3. 목재의 절단·제거·폐기·소각·재활용 한 단계 최소화 | ★ |
| 4. 절토층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 |
| 5. 폐사의 절단 | ★★★★ |
| 6. 폐사의 절단시 및 폐기시 재활용 | ★ |
| 7. 간·재활용에서 자원 | ★★★★ |
| 8. 폐사의 절단시 재활용 계획 | ★★★★ |
| 9. 절토층 보호를 위한 축적물의 사용 금지 | ★★★★ |
| 10. 환경영향은 최소화하기의 사용 | ★★ |
| 11. 폐사의 절단시 사용 | ★★ |
| 12. 재활용한 폐사의 사용 | ★★ |
| 13. 재활용한 폐사의 사용 | ★★ |
| 14. 폐사의 절단시 재활용 계획 | ★★★★ |
| 15. 재활용한 폐사의 사용 금지 | ★★★★ |
| 16. 재활용한 폐사의 사용 | ★★ |
| 17. 재활용 한 폐사의 사용 | ★★★★ |
| 18. 절토층 관리 사용 | ★★ |
| 19. 물 사용량 관리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 개요】
인증번호: K2023-2023-1340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발급기간: 2023.11.10 ~ 재발급일

【인증 대상】
영능등급: 우량영능등급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대상: 준공도면 및 시공현황
공급처: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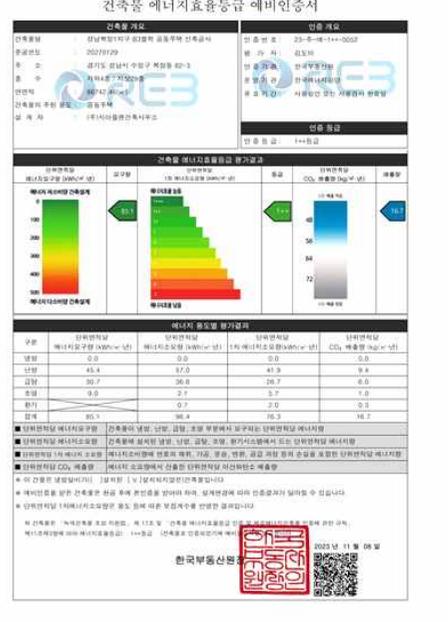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인증준비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 분야 | 합계등급 |
|------------|------|
| 표지사항 및 공통 | 31% |
| 에너지 및 환경영향 | 84% |
| 재료 및 자원 | 79% |
| 환경친화적 건축 | 74% |
| 유지관리 | 71% |
| 생태환경 | 33% |
| 빛환경 | 88% |

2023년 11월 10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K2023-2023-1340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발급기간: 2023.11.10 ~ 재발급일

위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되었습니다.

인증대상: 준공도면 및 시공현황
공급처: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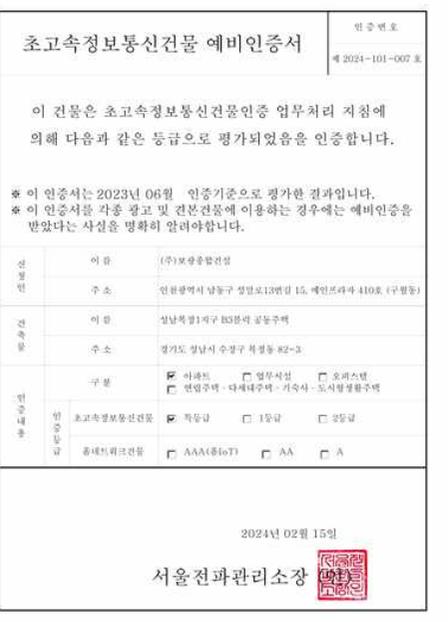
이 인증서는 2023년 06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전공에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임을 받으시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인증내역

| 영능등급 | 영능등급 |
|------------|------|
| 1. 에너지효율 | ★★★★ |
| 2. 에너지효율 | ★★★★ |
| 3. 에너지효율 | ★★★★ |
| 4. 에너지효율 | ★★★★ |
| 5. 에너지효율 | ★★★★ |
| 6. 에너지효율 | ★★★★ |
| 7. 에너지효율 | ★★★★ |
| 8. 에너지효율 | ★★★★ |
| 9. 에너지효율 | ★★★★ |
| 10. 에너지효율 | ★★★★ |
| 11. 에너지효율 | ★★★★ |
| 12. 에너지효율 | ★★★★ |
| 13. 에너지효율 | ★★★★ |
| 14. 에너지효율 | ★★★★ |
| 15. 에너지효율 | ★★★★ |
| 16. 에너지효율 | ★★★★ |
| 17. 에너지효율 | ★★★★ |
| 18. 에너지효율 | ★★★★ |
| 19. 에너지효율 | ★★★★ |
| 20. 에너지효율 | ★★★★ |
| 21. 에너지효율 | ★★★★ |
| 22. 에너지효율 | ★★★★ |
| 23. 에너지효율 | ★★★★ |
| 24. 에너지효율 | ★★★★ |
| 25. 에너지효율 | ★★★★ |
| 26. 에너지효율 | ★★★★ |
| 27. 에너지효율 | ★★★★ |
| 28. 에너지효율 | ★★★★ |
| 29. 에너지효율 | ★★★★ |
| 30. 에너지효율 | ★★★★ |
| 31. 에너지효율 | ★★★★ |
| 32. 에너지효율 | ★★★★ |
| 33. 에너지효율 | ★★★★ |
| 34. 에너지효율 | ★★★★ |
| 35. 에너지효율 | ★★★★ |
| 36. 에너지효율 | ★★★★ |
| 37. 에너지효율 | ★★★★ |
| 38. 에너지효율 | ★★★★ |
| 39. 에너지효율 | ★★★★ |
| 40. 에너지효율 | ★★★★ |
| 41. 에너지효율 | ★★★★ |
| 42. 에너지효율 | ★★★★ |
| 43. 에너지효율 | ★★★★ |
| 44. 에너지효율 | ★★★★ |
| 45. 에너지효율 | ★★★★ |
| 46. 에너지효율 | ★★★★ |
| 47. 에너지효율 | ★★★★ |
| 48. 에너지효율 | ★★★★ |
| 49. 에너지효율 | ★★★★ |
| 50. 에너지효율 | ★★★★ |
| 51. 에너지효율 | ★★★★ |
| 52. 에너지효율 | ★★★★ |
| 53. 에너지효율 | ★★★★ |
| 54. 에너지효율 | ★★★★ |
| 55. 에너지효율 | ★★★★ |
| 56. 에너지효율 | ★★★★ |
| 57. 에너지효율 | ★★★★ |
| 58. 에너지효율 | ★★★★ |
| 59. 에너지효율 | ★★★★ |
| 60. 에너지효율 | ★★★★ |
| 61. 에너지효율 | ★★★★ |
| 62. 에너지효율 | ★★★★ |
| 63. 에너지효율 | ★★★★ |
| 64. 에너지효율 | ★★★★ |
| 65. 에너지효율 | ★★★★ |
| 66. 에너지효율 | ★★★★ |
| 67. 에너지효율 | ★★★★ |
| 68. 에너지효율 | ★★★★ |
| 69. 에너지효율 | ★★★★ |
| 70. 에너지효율 | ★★★★ |
| 71. 에너지효율 | ★★★★ |
| 72. 에너지효율 | ★★★★ |
| 73. 에너지효율 | ★★★★ |
| 74. 에너지효율 | ★★★★ |
| 75. 에너지효율 | ★★★★ |
| 76. 에너지효율 | ★★★★ |
| 77. 에너지효율 | ★★★★ |
| 78. 에너지효율 | ★★★★ |
| 79. 에너지효율 | ★★★★ |
| 80. 에너지효율 | ★★★★ |
| 81. 에너지효율 | ★★★★ |
| 82. 에너지효율 | ★★★★ |
| 83. 에너지효율 | ★★★★ |
| 84. 에너지효율 | ★★★★ |
| 85. 에너지효율 | ★★★★ |
| 86. 에너지효율 | ★★★★ |
| 87. 에너지효율 | ★★★★ |
| 88. 에너지효율 | ★★★★ |
| 89. 에너지효율 | ★★★★ |
| 90. 에너지효율 | ★★★★ |
| 91. 에너지효율 | ★★★★ |
| 92. 에너지효율 | ★★★★ |
| 93. 에너지효율 | ★★★★ |
| 94. 에너지효율 | ★★★★ |
| 95. 에너지효율 | ★★★★ |
| 96. 에너지효율 | ★★★★ |
| 97. 에너지효율 | ★★★★ |
| 98. 에너지효율 | ★★★★ |
| 99. 에너지효율 | ★★★★ |
| 100. 에너지효율 | ★★★★ |

2023년 11월 08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K2024-101-007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이 인증서는 2023년 06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전공에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임을 받으시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인증내역

| 영능등급 | 영능등급 |
|--------------|------|
| 1. 초고속정보통신 | ★★★★ |
| 2. 초고속정보통신 | ★★★★ |
| 3. 초고속정보통신 | ★★★★ |
| 4. 초고속정보통신 | ★★★★ |
| 5. 초고속정보통신 | ★★★★ |
| 6. 초고속정보통신 | ★★★★ |
| 7. 초고속정보통신 | ★★★★ |
| 8. 초고속정보통신 | ★★★★ |
| 9. 초고속정보통신 | ★★★★ |
| 10. 초고속정보통신 | ★★★★ |
| 11. 초고속정보통신 | ★★★★ |
| 12. 초고속정보통신 | ★★★★ |
| 13. 초고속정보통신 | ★★★★ |
| 14. 초고속정보통신 | ★★★★ |
| 15. 초고속정보통신 | ★★★★ |
| 16. 초고속정보통신 | ★★★★ |
| 17. 초고속정보통신 | ★★★★ |
| 18. 초고속정보통신 | ★★★★ |
| 19. 초고속정보통신 | ★★★★ |
| 20. 초고속정보통신 | ★★★★ |
| 21. 초고속정보통신 | ★★★★ |
| 22. 초고속정보통신 | ★★★★ |
| 23. 초고속정보통신 | ★★★★ |
| 24. 초고속정보통신 | ★★★★ |
| 25. 초고속정보통신 | ★★★★ |
| 26. 초고속정보통신 | ★★★★ |
| 27. 초고속정보통신 | ★★★★ |
| 28. 초고속정보통신 | ★★★★ |
| 29. 초고속정보통신 | ★★★★ |
| 30. 초고속정보통신 | ★★★★ |
| 31. 초고속정보통신 | ★★★★ |
| 32. 초고속정보통신 | ★★★★ |
| 33. 초고속정보통신 | ★★★★ |
| 34. 초고속정보통신 | ★★★★ |
| 35. 초고속정보통신 | ★★★★ |
| 36. 초고속정보통신 | ★★★★ |
| 37. 초고속정보통신 | ★★★★ |
| 38. 초고속정보통신 | ★★★★ |
| 39. 초고속정보통신 | ★★★★ |
| 40. 초고속정보통신 | ★★★★ |
| 41. 초고속정보통신 | ★★★★ |
| 42. 초고속정보통신 | ★★★★ |
| 43. 초고속정보통신 | ★★★★ |
| 44. 초고속정보통신 | ★★★★ |
| 45. 초고속정보통신 | ★★★★ |
| 46. 초고속정보통신 | ★★★★ |
| 47. 초고속정보통신 | ★★★★ |
| 48. 초고속정보통신 | ★★★★ |
| 49. 초고속정보통신 | ★★★★ |
| 50. 초고속정보통신 | ★★★★ |
| 51. 초고속정보통신 | ★★★★ |
| 52. 초고속정보통신 | ★★★★ |
| 53. 초고속정보통신 | ★★★★ |
| 54. 초고속정보통신 | ★★★★ |
| 55. 초고속정보통신 | ★★★★ |
| 56. 초고속정보통신 | ★★★★ |
| 57. 초고속정보통신 | ★★★★ |
| 58. 초고속정보통신 | ★★★★ |
| 59. 초고속정보통신 | ★★★★ |
| 60. 초고속정보통신 | ★★★★ |
| 61. 초고속정보통신 | ★★★★ |
| 62. 초고속정보통신 | ★★★★ |
| 63. 초고속정보통신 | ★★★★ |
| 64. 초고속정보통신 | ★★★★ |
| 65. 초고속정보통신 | ★★★★ |
| 66. 초고속정보통신 | ★★★★ |
| 67. 초고속정보통신 | ★★★★ |
| 68. 초고속정보통신 | ★★★★ |
| 69. 초고속정보통신 | ★★★★ |
| 70. 초고속정보통신 | ★★★★ |
| 71. 초고속정보통신 | ★★★★ |
| 72. 초고속정보통신 | ★★★★ |
| 73. 초고속정보통신 | ★★★★ |
| 74. 초고속정보통신 | ★★★★ |
| 75. 초고속정보통신 | ★★★★ |
| 76. 초고속정보통신 | ★★★★ |
| 77. 초고속정보통신 | ★★★★ |
| 78. 초고속정보통신 | ★★★★ |
| 79. 초고속정보통신 | ★★★★ |
| 80. 초고속정보통신 | ★★★★ |
| 81. 초고속정보통신 | ★★★★ |
| 82. 초고속정보통신 | ★★★★ |
| 83. 초고속정보통신 | ★★★★ |
| 84. 초고속정보통신 | ★★★★ |
| 85. 초고속정보통신 | ★★★★ |
| 86. 초고속정보통신 | ★★★★ |
| 87. 초고속정보통신 | ★★★★ |
| 88. 초고속정보통신 | ★★★★ |
| 89. 초고속정보통신 | ★★★★ |
| 90. 초고속정보통신 | ★★★★ |
| 91. 초고속정보통신 | ★★★★ |
| 92. 초고속정보통신 | ★★★★ |
| 93. 초고속정보통신 | ★★★★ |
| 94. 초고속정보통신 | ★★★★ |
| 95. 초고속정보통신 | ★★★★ |
| 96. 초고속정보통신 | ★★★★ |
| 97. 초고속정보통신 | ★★★★ |
| 98. 초고속정보통신 | ★★★★ |
| 99. 초고속정보통신 | ★★★★ |
| 100. 초고속정보통신 | ★★★★ |

2024년 02월 15일
서울전과관리소장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미적용 |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 적용총액 | 구 분 | | 적용총액 | 구 분 | | 적용총액 | |
|-------------|---------|-----------------|-------------|---------------|---------------|-----------------|------------------|-----------------|---------------|
| 택지비 | 택지매입원가 | 312,516,071,100 | 공 사 비 | 건 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29,394,870,000 | 기 계 설 비 | 위생기구설비공사 | 839,480,000 |
| | 기간이자 | 30,648,515,504 | | | 용접공사 | | | 난방설비공사 | 2,232,450,000 |
| | 필요적 경비 | 14,269,621,936 | | | 조적공사 | 1,153,490,000 | | 가스설비공사 | 470,480,000 |
| | 그밖의 비용 | 20,264,371,516 | | | 미장공사 | 2,018,610,000 | | 자동제어설비공사 | 193,700,000 |
| | 계 | 377,698,580,056 | | | 단열공사 | 628,010,000 | | 특수설비공사 | |
| 공 사 비 | 토 목 | 토공사 | | | 1,867,140,000 | 방수, 방습공사 | 865,120,000 | 공조설비공사 | 538,980,000 |
| | | 흙막이공사 | | | | 목공사 | 1,884,040,000 | 전기설비공사 | 8,610,000,000 |
| | | 비탈면보호공사 | | | | 가구공사 | 4,921,570,000 | 정보통신공사 | 7,749,000,000 |
| | | 옹벽공사 | | | | 금속공사 | 2,025,020,000 | 소방설비공사 | 7,995,000,000 |
| | | 석축공사 | | | | 지붕 및 홍통공사 | 185,840,000 | 승강기공사 | 2,047,950,000 |
| | | 우, 오수공사 | | 860,508,000 | 창호공사 | 3,204,150,000 | 그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6,150,000,000 |
| | | 공동구공사 | | | 유리공사 | 884,350,000 | 이 윤 | 11,070,000,000 | |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 | 타일공사 | 1,832,770,000 | 계 | 121,278,984,000 | |
| | | 도로포장공사 | | 860,508,000 | 돌공사 | 2,268,540,000 | 설계비 | 1,633,000,000 | |
|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 도장공사 | 1,127,860,000 | 감리비 | 3,353,935,900 | |
| | 정화조시설공사 | | | 도배공사 | 820,260,000 | 일반분양시설경비 | 1,483,133,569 | | |
| | 조경공사 | 2,760,120,000 | | 수장공사 | 2,069,880,000 | 분담금 및 부담금 | 1,950,000,000 | | |
| | 부대시설공사 | 48,708,000 | | 주방용구공사 | 801,040,000 | 보상비 | | | |
| | 건 축 | 공통가설공사 | | 3,043,950,000 | 잡공사 | 2,813,260,000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17,653,654,121 | |
| | | 가시시설물공사 | | 608,790,000 | 급수설비공사 | 1,023,980,000 | 계 | 26,073,723,590 | |
| 지정 및 기초공사 | | 1,531,580,000 | 급탕설비공사 | 1,023,980,000 | 그밖의 비용 | 26,102,812,354 | | | |
| 철골공사 | | | 오배수설비공사 | 854,000,000 | 합 계 | 551,154,100,000 | | | |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 목 | | 금 액 | 항 목 | | 금 액 | | |
|------------|---------------|----------------|------------|-----------------|---------------------|---------------|---------------|
| 택지비 가산비 | 법정 택지이자 | 30,648,515,504 | 건축비 가산비 |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 799,049,679 | | |
| | 취득세 | 취득세 | | 12,500,642,844 | 인텔리전트 설비공사비 | 홈네트워크 | 4,967,289,827 |
| | | 지방교육세 | | 1,250,064,284 | | 초고속통신특등급 | 1,288,213,350 |
| | 재산세 | 재산세 | | 251,041,965 | | 에어컨냉매배관 | 1,735,199,820 |
| | | 지방교육세 | | 50,208,389 | 기계환기설비 | 2,545,022,430 | |
| | | 재산세도시지역분 | | 175,729,377 | 공동주택성능등급 | 4,606,445,887 | |
| | 등기수수료 | 보수료 | | 41,586,649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2,058,005,864 | |
| | | 인지세 | | 348,428 |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 295,593,300 | |
| | 암석지방공사비 | 12,054,853,375 | | 법령 개정에 따른가산비 | 전기자동차충전기 | 290,422,000 | |
|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6,239,150,624 | | | 건강친화형주택(흡착흡방습친환경자재) | 4,881,262,167 | |
| | 지역난방부담금 | 676,810,751 | | 건축특화 | 사전당첨자 모집비 | 251,962,930 | |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293,559,000 | | | 외관특화공사비 | 828,775,900 | |
| | 계 | 65,182,511,190 | | 분양보증수수료 | | 1,561,146,567 | |
| | | 계 | | 26,108,389,721 | | | |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본 아파트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북정1지구 B3블록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1282024-101-0003300호 | 440,923,280,000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을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것에 대하여 동의함.
 - ※ 별도계약품목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
| 회 사 명 |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일신전기감리 | ㈜동우이앤씨 | ㈜하나종합테크 |
| 감리금액 | 1,858,822,900 | 638,070,000 | 728,343,000 | 128,700,000 |

관리형 토지신탁

본 주택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시행위탁자” ㈜보광종합건설과 “시행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이 2024년03월12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1.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숙지, 확인, 인지하여야만 한다.
2.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자 ㈜보광종합건설과 시행수탁자 ㈜한국토지신탁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이 공급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신탁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시행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자 ㈜보광종합건설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3. 시행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본 공급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 시공사 책임의 공사 지연을 제외한사유로 발생하는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등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보광종합건설이 부담하고, 시공사 책임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주지연 지체상금, 건축물의 하자보수 의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사 ㈜KR산업이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4. 매수인은 본 분양목적물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해지(일부해지 및 일부후실에 대한 소유권이전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상기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시공사 ㈜KR산업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6. ㈜한국토지신탁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은 반드시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7. 분양대금은 본 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PF대출 원리금의 상환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8. 수분양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 집단대출 미승인, 대출금융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 또는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시행위탁자 ㈜보광종합건설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내(30일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10. ㈜한국토지신탁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위탁자 ㈜보광종합건설과 매수인 간에 또는 시공사 ㈜KR산업과 매수인 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11.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주체 및 관계사

| 구 분 | 시행수탁자(사업주체) | 시행위탁자 | 시공사 |
|--------|-------------------------|---------------------------------------|-----------------------------|
| 상 호 | ㈜한국토지신탁 | ㈜보광종합건설 | ㈜케이알산업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13번길15, 410호(구월동,메인프라자)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2-1, 1층 |
| 법인등록번호 | 110111-1258220 | 176011-0013132 | 171211-0002799 |

■ 사업주체 및 관계회사 안내

1. 등록업자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2.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B3BL
3.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10
4.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5.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6.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개별등기

■ 홈페이지 주소 : <http://엘리프 남위례역.com>

■ 분양사무실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80 케이알산업 위례사옥 1층

■ 분양문의 : ☎ 1566-8170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분양사무실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